

2025년도 제1회 담양군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(속기)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

2025년도 제1회 담양군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(속기)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※ 재공고 사유 : 서류전형 결과 임용예정 인원과 동일하여 재공고함

2025년 2월 5일

담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 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근무부서	임용 예정 분야	임용예 정 직 급	인원	임용기간	담당업무	근무시간
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	속기 분야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1명	채용일로 부터 2년	· 각종 회의록 작성·보관 등 ·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· 본회의 및 각 위원회 진행보조 · 그 밖에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업무	주35시간

※ 임용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,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제2항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「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자격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가. 공통요건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7. 12. 31.이전 출생자)
- 성별·주소지 : 제한없음
 - 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
- 국 적 : 대한민국(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<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>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 등의 취업제한)

<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>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<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>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응시요건

○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

임용분야	자 격 요 건
속기분야	· 1년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(속기)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※ 필수자격 -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(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 인정)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* 에서의 속기분야 실무경력

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www.alio.go.kr)에서 지정된 기관

※ 관련분야 경력은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로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,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
※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.

예시)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으로 인정(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)

4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심사방법 :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서면 심사
- 합격자 결정 :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
 - ※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: 재공고
 -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, 기존 응시자는 추가 원서 접수없이 기존 점수의 효력이 인정됨.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심사대상 : 1차시험 합격자
- 심사방법 : 개별 면접,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
- 평가요소 : 5개
 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-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-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-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 -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평가기준 : 5개 평가요소별 상·중·하 등급으로 평점(등급별 배점 부여)

평 정 요 소	배 점	상	중	하
가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20점	20	15	10
나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	20점	20	15	10
다.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20점	20	15	10
라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	20점	20	15	10
마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20점	20	15	10
합 계	100점			

※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각 항목마다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수를 합산함.

○ 불합격기준

-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
-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

○ 합격자 결정 : 2차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성적 최고득점자로 선발[단, 동점자 발생시 최후 1인 (선발인원)이 될 때까지 재면접 실시하여 결정]

※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5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임용시험 공고	2025.2.5.~2.17.(12일간)	담양군의회 홈페이지, 나라일터 공고
원서 접수기간	2025.2.13.~2.17.(기간 중 3일간)	방문 또는 등기우편(익일특급) ※ 토·일요일, 공휴일 접수 불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2025. 2. 19(수)예정	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(합격자 개별 통보)
면접시험	2025. 2. 21.(금)예정	
합격자 발표	2025. 2. 25.(화)예정	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(합격자 개별 통보)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변경사항은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
6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근무 거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및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- 근무기간 : 2년(5년의 범위내에서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)
- 보수(연봉)수준 : 27,735천원
 - 근무 거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(행정안전부예규 제295호)
 - 9급(상당)의 경우 연봉 하한액이 없으므로 임용분야의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연봉상한액의 60%를 하한액으로 결정

구 분	근무시간	연봉산정액	산출근거
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9급상당)	주 35시간	27,735천원	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한 9급상당 연봉 상한액의 60% 적용(하한액 결정) -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: 35h/40h $52,829\text{천원(상한액)} \times 60\% \times 35\text{h} / 40\text{h} = 27,735\text{천원}$

※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

※ 고용노동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)

※ 복무관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,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지방공무원 규정에 따름

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원서교부

- 담양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dycouncil.go.kr>) “고시공고” 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(응시원서, 이력서 등)을 다운로드받아 사용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2. 13.(목) ~ 2. 17.(월) / 기간 중 3일간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접 수 처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팀 ☎ 061-380-3531)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(빠른등기) 접수
 - 방문접수 : 평일 근무시간 09:00~18:00(12:00~13:00제외) 내에만 접수 가능
 - 등기우편 접수 :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

※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

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
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합니다. - <u>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 마감일(18:00까지)내에 인사담당자(061-380-3531)에게 우편발송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.</u> - 우편봉투에는 ‘일반임기제(속기) 임용 응시원서 재중’ 문구를 표기하기 바랍니다. -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을 구입하여 동봉하되, 응시원서에 부착 금지 -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유선이나 핸드폰 문자로 통보하오니 연락처 정확히 기재 -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-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:00까지입니다.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 - 접수처 주소 : 우)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,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인사담당자)

8.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1호서식) 1부
- ② 응시원서(별지 2호서식) 1부
 - 응시수수료 : 5,000원(수입증지)

- * 응시수수료는 담양군청 민원과에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
- 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- * 등기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‘우체국 통상환증서’로 대체
- *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불가

③ 이력서(별지 3호서식) 1부

-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제출 증빙서류(경력·재직증명서 등)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경력기간 미인정)

④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내외) (별지 4호서식) 1부

⑤ 직무수행 계획서(A4용지 5매 내외) (별지 5호서식) 1부

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

-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
- 대학원 이상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⑦ 주민등록 초본 1부 : 병역사항, 개명사항 포함

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6호서식) 1부

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별지 7호서식)

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(별지 8호서식)

⑪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.(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)

- **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**(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)
- 기관 발급서식이 없을 경우 서식(별지10호)에 내역 작성 후 기관장 직인 날인
- **발행기관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, 상근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**(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)
- *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**담당업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(업무분장표 등) 추가 제출**(미제출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) : 별도 서류에는 서류 확인(발급)자의 직위, 성명, 연락처 기재
- *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이

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(미제출시 경력 불인정)
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,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-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
-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임.

⑫ 관련분야 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

-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발급)
 -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- 소득금액증명서 (국세청 발급) 1부
 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 - 발급신청시 과세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(연도) 전체 설정
-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
⑬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(상훈, 연구실적, 자격증 등)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, 연구실적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 필)을 첨부하여 제출
-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- 논문,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 요약 1부.

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▶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(단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) 원본으로 제출
- ▶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▶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
9.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 청구

- 청구기한 : 최종합격일로부터 1개월까지
- 청구방법 : 반환청구서(별지 9호서식) 작성 제출
[우편 또는 팩스(061-380-3590) 또는 방문 제출]
- ※ 청구기한 내 반환 미청구 시 채용서류는 파기될 수 있음.

10. 기타사항

-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작성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서류 발급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.
※ 단, 최종합격자 발표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응시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.
- 복무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적용합니다.
-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예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임용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 발생 시 담양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dycouncil.go.kr>) ‘고시공고’란에 공지 및 응시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자(☎061-380-3531)

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속기분야	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담양군의회	의회사무과

주요업무	○ 담양군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회의록 작성·보관 ○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○ 본회의 및 각 위원회 진행보조 ○ 그 밖에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업무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윤리의식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 지향마인드(공복의식, 친절) ○ (직급별 역량) 과업이해력, 치밀성, 협조성, 조직헌신 ○ (직렬별 역량) 정보관리능력,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력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속기 관련 각종 지식
-------------	---

응시 자격 요건	관련분야 : 속기
	○ 1년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(속기)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필수자격 -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(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 인정)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* 에서의 속기분야 실무경력 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www.alio.go.kr)에서 지정된 기관